

서울특별시 서초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고광민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10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 . 4 . 30 .

발 의 자 : 고광민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이현숙·장옥준·김안숙
박미효·허은·김성주
박지남·최원준·김익태
김정우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 시설 및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함(안 제6조)

- 1) 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, 경로당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미세먼지 보호장비와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
- 2)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

나. 예산조치 : 예산 반영 필요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서초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초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) 구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, 경로당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
미세먼지 보호장비 및 저감시설 설치 지원
2.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
하는 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) 구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대응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(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) 구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, 경로당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미세먼지 보호장비 및 저감시설 설치 지원 2.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관 계 법 령

□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(2019.2.15 시행)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,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(이하 "미세먼지등"이라 한다)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·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국과 협력하여야 한다.